

地方稅에 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

(전희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7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8.

발의자 : 전희경 · 김성원 · 민경욱
김승희 · 임이자 · 강석진
함진규 · 김선동 · 정태옥
이종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「지방세법」이 제정·시행될 때 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, 「지방세법」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.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 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地方稅에 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

地方稅에 關한臨時措置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